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 6.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경위 1명, 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4.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4급 또는 5급 1명) 조정하고,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의 일부 정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 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6명(9급 6명)을 과학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0. ~ 6.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전자감독 및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을 “전자감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의2제2항 중 “인권정책과·인권구조과·인권조사과 및 여성아동 인권과”를 “인권정책과·인권구조과·인권조사과·여성아동인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로 보한다”를 “검사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통계 관리·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가·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
제27조제10항제3호의3 중 “출입국사범”을 “입국재심업무 관련 출입국사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9항제15의2호는 제외한다.
제27조제25항 중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
· 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

제33조제9항제3호 전단 중 “보호직”을 “약무직 3명(6급 1명, 7급 2명), 보호직”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786”을 “795”로 하고, 일반직 계 “745”를 “75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을 “2”로,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8”을 “29”로, 검찰주사 “35”를 “36”으로 하고, 교감·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다음에 “직업상담주사 1”를 신설하며, 검찰주사보 “11”을 “12”로 하고, 보호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삭제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신설하고, 운전

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0”을 “11”로 하며, 운전서기보 “9”를 “1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5”를 “23”으로, 경찰공무원 계 “4”를 “6”으로 하고, 경감 1 다음에 “경위 1”를 신설하며, 경위 1 다음에 “경사 1”를 신설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786”을 “795”로 하고, 일반직 계 “745”를 “75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을 “2”로, 서기관 또는 교정관 “3”을 “4”로, 교정관 “24”를 “23”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28”을 “29”로, 검찰주사 “35”를 “36”으로 하고, 교감·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다음에 “직업상담주사 1”를 신설하며, 검찰주사보 “11”을 “12”로 하고,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다음에 “행정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를 신설하며, 운전서기 1 다음에 “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를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4”를 “5”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0”을 “11”로 하며, 운전서기보 “9”를 “10”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5”를 “23”으로, 경찰공무원 계 “4”를 “6”으로 하고, 경감 1 다음에 “경위 1”를 신설하며, 경위 1 다음에 “경사 1”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보 “89”를 “90”으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7의2 중 공업서기보 “89”를 “90”으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9 중 보호서기보 “171”을 “172”로 하고, 공업서기보 “17”을 “19”로 하며, “건축운영서기보 1”를 삭제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5”를 “4”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2 출입국관리주사보 714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보 1”를 삭제하며, 출입국관리서기보 “528”을 “529”로 하고, 방호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12의2 출입국관리주사보 714 다음에 “공업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주사보 1”를 삭제하며, 출입국관리서기보 “528”을 “529”로 하고, 방호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1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명 (4급 1명, 5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심의과	2명 (5급 2명)	2024년 9월 30일까지
3) 법무실 송무심의관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5년 3월 31일까지
4) 인권국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9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5) 국제법무국	1명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급)	2026년 6월 30일까지

6)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3명 (3·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5년 3월 31일까지
7)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6명 (4급·검사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6월 30일까지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중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를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범죄예방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5호·제6호의 사항은 전자감독과장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교정관 1명)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교정관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 ⑧ (생략)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u>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삭제></u>
10. ~ 12. 삭제	
13. <u>전자감독 및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u>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13. <u>전자감독</u> ----- ----- -----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⑩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설></u>	6. <u>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u>
⑪ (생략)	⑪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인권국) ① (생략)	제7조의2(인권국) ① (현행과 같음)

②인권국에 인권정책과·인권
구조과·인권조사과 및 여성아
동인권과를 둔다.

③ 인권정책과장 및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조사과장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여성아동인권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 ⑦ (생략)
<신설>

②----- 인권정책과 · 인권구
조과 · 인권조사과 · 여성아동인
권과 및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
터-----.

③ -----

----- 검사로, 범
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은 서
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실시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통계

	<u>관리·분석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u> <u>5.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u>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⑨ (생략)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이민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u>	<u><삭 제></u>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⑪ ~ ⑮ (생략)	⑪ ~ ⑮ (현행과 같음)
⑯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u><신 설></u>	<u>5.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작성 및 분석</u>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⑨ (생략)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출입국항에서의 <u>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u> ·과태료부과 등 심사결정	3의3. ----- <u>입국재심 업무 관련 출입국사범</u> -----
3의4.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⑪ ~ ⑬ (생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⑭ 보안관리과장은 제9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u><단서 신설></u>	⑭ ----- ----- ----. <u>단, 제9항제15의2호는 제외한다.</u>
⑮ ~ ⑳ (생략)	⑮ ~ ㉔ (현행과 같음)
㉕ <u>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u>	㉕ ----- - <u>다음 각 호의</u> ----- -----.
<u><신 설></u>	<u>1. 출국대기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 송환대상외국인 송환과 관련된 출입국사범의 조사·고발 및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 심사결정</u>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	⑨ ----- ----- -----

15항제1호·제2호의 사항은 교
정기획과장이, 같은 항 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보안과
장이, 같은 항 제6호의 사항은
분류심사과장이, 외국인정보빅
데이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이민정보과장이, 서울지방교정
청·대구지방교정청·대전지방
교정청·광주지방교정청의 광
역특별사법경찰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은 각 지방교정청의 보
안과장이, 대구교도소·대전교
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경북북부제1교도소·서울구
치소·서울남부구치소·서울동
부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
치소·인천구치소의 특별사법
경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각
교도소·구치소의 보안과장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
국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
인청 입국재심1과장이, 김해공
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국
대기실운영팀장이 분장하는 사
항은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심사과장이 분장한다.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786</u>	<u>795</u>	+9
·	·	·	
·	·	·	
일반직 계	<u>745</u>	<u>752</u>	+7
·	·	·	
·	·	·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u>1</u>	<u>2</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u>28</u>	<u>29</u>	+1
·	·	·	
·	·	·	
검찰주사	<u>35</u>	<u>36</u>	+1
·	·	·	
·	·	·	

교감·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	
직업상담주사	<신 설>	<u>1</u>	+1
·	·	·	
·	·	·	
검찰주사보	<u>11</u>	<u>12</u>	+1
·	·	·	
·	·	·	
보호서기	1		
행정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삭 제>	-1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신 설>	1	+1
운전서기	1		
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신 설>	<u>1</u>	+1
행정서기보	<u>4</u>	<u>5</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u>10</u>	<u>11</u>	+1
·	·	·	
·	·	·	

운전서기보	<u>9</u>	<u>10</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5</u>	<u>23</u>	-2
.	.	.	
.	.	.	
경찰공무원 계	<u>4</u>	<u>6</u>	+2
.	.	.	
경감	1	.	
<u>경위</u>	<u><신 설></u>	<u>1</u>	+1
<u>경사</u>	<u><신 설></u>	<u>1</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6</u>	<u>795</u>	+9
.	.	.	
.	.	.	
일반직 계	<u>745</u>	<u>752</u>	+7
.	.	.	
.	.	.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u>1</u>	<u>2</u>	+1
.	.	.	
.	.	.	
서기관 또는 교정관	<u>3</u>	<u>4</u>	+1
.	.	.	
.	.	.	
교정관	<u>24</u>	<u>23</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u>28</u>	<u>29</u>	+1
·	·	·	
·	·	·	
검찰주사	<u>35</u>	<u>36</u>	+1
·	·	·	
·	·	·	
교감·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	
직업상담주사	<신 설>	<u>1</u>	+1
·	·	·	
·	·	·	
검찰주사보	<u>11</u>	<u>12</u>	+1
·	·	·	·
·	·	·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행정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u>1</u>	<삭 제>	-1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신 설>	1	+1

운전서기	1	·	
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신 설>	<u>1</u>	+1
행정서기보	<u>4</u>	<u>5</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u>10</u>	<u>11</u>	+1
·	·	·	
·	·	·	
운전서기보	<u>9</u>	<u>10</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25</u>	<u>23</u>	-2
·	·	·	
·	·	·	
경찰공무원 계	<u>4</u>	<u>6</u>	+2
·	·	·	
경감	1	·	
경위	<신 설>	<u>1</u>	+1
경사	<신 설>	<u>1</u>	+1
·	·	·	

.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89</u>	<u>90</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3</u>	<u>2</u>	-1
.	.	.	
.	.	.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89</u>	<u>90</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3</u>	<u>2</u>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보호서기보	<u>171</u>	<u>172</u>	+1
공업서기보	<u>17</u>	<u>19</u>	+2
·	·	·	
·	·	·	
건축운영서기보	<u>1</u>	<삭 제>	-1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5</u>	<u>4</u>	-1
사무운영서기보	<u>1</u>	<삭 제>	-1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714		
공업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 설>	<u>1</u>	+1
·	·	·	
방송통신주사보	<u>1</u>	<삭 제>	-1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28</u>	<u>529</u>	+1
·	·	·	
·	·	·	
방호서기보	<u>6</u>	<u>5</u>	-1
·	·	·	

신·구정원대비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714		
공업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신 설>	<u>1</u>	+1
·	·	·	
방송통신주사보	<u>1</u>	<삭 제>	-1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28</u>	<u>529</u>	+1
·	·	·	
·	·	·	
방호서기보	<u>6</u>	<u>5</u>	-1
·	·	·	